

(第12回一建設第1次)

<p>□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개정 ('94.1.1)으로 담배소비세 수입의 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에 따른 추가 전출분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직무수당이 봉급에 편입됨에 따른 교원 인건비 추가분 확보와 ○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의 개정('94.3.16)으로 인하여 시의회 회기일수 연장 및 일비증액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확보 ○ 정부지침에 따른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경비에 필요한 소요재원 890억 2천만원 마련을 위하여 기정 예산을 경정하게 되었으며 ○ 그중 도로국 소관 경정예산은 건설사업비에서 28억원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. <p>□ 그러면 금년도 도로국 소관 추경 예산편성(안)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</p> <p>당초 예산 6,925억 8천 48만 6천원 중 금번 28억원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(안)은 6,897억 8천 48만 6천원이 되겠으며, 이는 당초보다 약 0.4% 감소된 규모입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그 경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강서로~경인로간 도로개설사업이 당초 토지매입비가 36억원이었으나 공사구간중 영등포구치소 및 교도소구간의 계획변경으로 보상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0억원을 경정하게 되었으며, ○ 또한 시흥대로~보라매공원간 도로개설사 	<p>업은 '94.7.20 준공됨에 따라 채무액 40억원 중 32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억원을 경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.</p> <p>.....</p> <p>이상과 같이 道路局所管 追加更正豫算 編成案을 간략하게 說明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教育廳 支援事業이 불가피한 措置임을 널리 諒解하시어 議決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○ 委員長 金禹仲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</p> <p>○ 專門委員 秋在燁 專門委員 秋在燁입니다.</p> <p>1994年度 道路局所管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告)</p> <p>○ 본 추가경정예산(안)은 '93년 정기회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건설사업비 예산 총 692,580,486천원 중 0.4%에 해당하는 28억원을 삭감하여 689,780,486천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</p> <p>○ 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(안) 총액 89,019,260천원 중 3%에 해당하는 28억원이 도로국 소관 분야에서 삭감 부분임.</p> <p>○ 세부조정내역은 건설사업비 중 강서로~경인로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20억원을 삭감하고 시흥대로~보라매공원간 도로개설사업에서 8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세부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.</p>				
□ 주요 사업비 경정(삭감)내역					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경정예산(안)	기정예산	증감	비율	경정사유
계	4,800,000	7,600,000	△2,800,000		
강서로~경인로간 도로개설사업	1,600,000	3,600,000	△2,000,000		도로개설구간내 영등포 교 도소 보상면적 감소에 따 른 집행잔액
시흥대로~보라매공 원간 도로개설사업	3,200,000	4,000,000	△ 800,000		'93채무원인행위 미이행에 따른 집행잔액